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시험일정

□ 임용분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직무내용
정책지원관	임기제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7급)	2명	서초구의회 (정책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화·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및 참석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 <p>※ 지방공무원(「지방자치법」 제41조)인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홍보 등은 지원할 수 없음</p>

○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 1년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2023.9.01.(금) ~ 09.05.(화) (인성검사 실시)	2023.09.08.(금)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2023.09.18.(월) 예정	2023.09.19.(화)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2023.10.10.(화) 예정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20세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응시자격
정책지원관 (7급)	1. 학사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대학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연구소에서 법무, 행정, 지방자치, 예산, 결산, 감사, 조사, 정책개발, 분석 관련 업무경력

※ 실무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무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4. 보수 수준

(단위: 천원)

구분	구분	상한액	하한액
정책지원관	7급(상당)	64,776천원	46,006천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지급
- 공무원 연금법('18.9.21.자 시행)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 대상임
- 선택적 복지(복지포인트) 제공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09.01.(금) ~ 9. 5.(화)(3일간)

<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12:00~13:00제외) >

- 접수처 : 서초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별관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원서접수 시 인성검사지 작성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초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서초구청 1층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및 인성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인 성 검 사	
	날 짜	장 소
2023.09.08.(금) 예정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2023.09.01.(금) ~ 09.05.(화)	서초구의회 의회사무국 (응시원서 접수 시)

- 2차 면접시험

면 접 시 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날 짜	장 소	
2023.09.18.(월) 예정	서초구의회 3층 제1위원회실 ※대기장소 : 별도통보	2023.09.19.(화) 예정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 일정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자료를 면접 시 활용

- 인성검사는 서류접수 시 작성하며,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시 면접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다.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
- (평가요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기준) ① 시험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점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첨부1) 1부

- 응시수수료 : 서초구수입증지 6급·7급 7,000원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응시수수료 참고 : 5급 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4)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5)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첨부6)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응시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

○ **인성검사 결과 활용 동의서(첨부9)**

○ **개별 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 정보화자격증 등 각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서초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 2155-7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